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Human Rights Sensitivity of Undergraduates in Social Welfare Classes : Focused on Adult Learner in On-line University

박형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yungwon Park(swhwp@iscu.ac.kr)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S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수강중인 251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5점 척도 기준에서 2.70으로서 중간 정도수준이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냈다. 전공유형,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계열 전공 학생과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또한 인권감수성 척도의 에피소드별로 인권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교육함에 있어 수업에서의 학생 권리 존중, 직간접적으로 인권갈등사례를 학습하면서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방법의 필요성, 수업과정에서의 자기반성적 과정의 필요성,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인권 | 인권감수성 | 인권교육 | 사회복지 | 원격대학 | 성인학습자 |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explor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undergraduates who were in the social welfare classes with regards to socio-demographic factors, education experiences in human rights. 251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ith frequency, ANOVA. Analysis revealed that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level was 2.70(moderate) and the respondents showed high level of sensitivity in work rights of emigration workers and education rights of handicapped children. Among demographic variables,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ajor and experiences of attending a social welfare ethics. The students who majored social welfare and who had attended a social welfare ethics showed high human rights sensitivity. There were differences in human rights sensitivity level according to each episode.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in the education of social worker as a human rights professionals it would be necessary to respect students' rights in the classes and to provide student customized human rights education. It was suggested that learning human rights dilemma cases and self reflection processes in classes would be necessary to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 keyword : | Human Rights | Human Rights Sensitivity | Human Rights Education | Social Welfare | On-line University | Adult Learner |

I. 서론

사회적 의식의 향상,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기구와 인권단체를 보유하게 되었고,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1].

인권은 인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자연권적·보편적 성격을 갖지만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먼 추상적이거나 정치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불법감금, 폭력적 제압 등 극심한 인권침해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의식이 향상되면서 생활 속 곳곳에서 인권과 관련된 갈등상황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고, 인권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환경과 가치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이 변화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일관되게 표방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권리, 사회정의 등이다. 빈곤과 빈부격차, 차별과 배제,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대변하는 전문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프(2001)는 다른 전문분야보다 사회복지직이 '인권 전문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를 넘어서 인권 실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학문이며, 개인적·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복지대상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존엄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인권의식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자 인권옹호행동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의식은 복지대상자들의 인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지대하지만, 인

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과 관련된 갈등상황을 겪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구[3]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과 편견, 낙인속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치료권, 비밀보장,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등을 주제로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4][5]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예비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서 인권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UN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영향으로 아동복지 영역에서도 아동의 권리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아동권리에 대한 지각 정도 연구[6]가 수행되었고, 아동복지 교과과정에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7],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인권태도 연구[8]도 시도되고 있다.1)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개념이 복지대상자에 대한 인권옹호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철학적·정치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실천적 의미의 인권의식이 있어야 한다. 즉 인권개념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인권의 딜레마 상황, 인권을 옹호하는 판단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9], 예비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담아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격대학의 사회복지 교과목 수강 성인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실천과 인권

인권과 사회정의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매우 중

1) 인권관련 개념으로 인권감수성, 인권민감성, 인권태도, 인권의식, 인권인식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인권감수성 척도개발 연구 모형에 따라 '인권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요하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상황실태조사에서 종사자들은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인권인식부족을 두 번째 요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10].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4],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클라이언트의 권리이슈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연구결과[3]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이프(2006)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 관점은 사회복지사들에게 별도의 행동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개별상담, 대화기법, 옹호나 지지, 정책개발,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미 하고 있는 업무에서 인권관점으로서의 사고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정을 지칭하고 있다[11]. 박태영(2002)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은 특수한 영역, 즉 외국인 노동자, 정신장애인, 일부 시설생활자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은 영역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일반적으로 인권을 '좋은 생각, 바람직한 생각'으로만 인식하고 자신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생각이나 실천방안 모색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권의식을 갖춘 역량있는 사회복지사는 쉽게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12]. 즉,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내면화는 사회복지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이란 인권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1].

인권옹호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

며, 이것이 인권감수성인 것이다.

또한 인권을 인식하는 것이 옹호행위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저절로 갖게 되는 실질적 의미의 인권인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즉, 인권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딜레마 상황, 무엇이 인권을 옹호하는 판단이고 행동인지 결정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서적 공감' 능력은 인권옹호행위를 실행하는데 직접적 역할을 한다[9].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인권 감수성의 하위개념으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설명하고 있다[1]. 상황지각은 상황에 대한 해석능력으로 특정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인권적 상황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는 인권상황 지각능력을 의미한다. 결과지각은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지각능력으로서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책임지각은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각능력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법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오던 인권 관련 논의는 최근 들어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겐츠(1985)는 인권에 대한 태도와 도덕성 발달을 연결지어 원리적 도덕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인권을 옹호한다는 사실과 인권의식은 발달하는 인지적 요인임을 밝혔다[13].

사회복지학에서는 인권 개념이나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정신장애인의 퇴원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연구[14],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 연구[5]등 주로 정신보건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정신장애라는 장애의 특성상 인권보장이 다수의 안전이나 치료적 이득을 고려할 때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15] 정신보건 현장

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3]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경험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76%가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학의 사회복지교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태도연구[8]결과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공감, 인권선언 인지여부, 인권교육경험 여부, 주변 소수자의 인권침해경험 여부, 참여활동 정도가 인권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론 과목에서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을 진행했을 때 인권감수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는 교과목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7].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인권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달하는 것이며, 개인의 삶의 경험이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권의식 발달에 있어 인권교육의 중요성, 교과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의 사회복지 교과목 수강 성인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선행연구가 현직 사회복지사나 청년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중장년층의 연구대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와 의식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성인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콘텐츠 제작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S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사회복지학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에 실시되었다. 온라인 강의실의 과목 게시판에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후 작성한 설

문지를 연구자의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였다. 취합된 설문지는 251부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주요 연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하였다.

2. 측정도구

2.1 인권감수성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척도(2002)[1]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학생 및 성인용 도구로서 인권침해 사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관련 갈등상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읽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을 비교하여 중요도를 평정하는 방식의 설문지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각 에피소드에서 I 번 질문은 상황지각, II 번 질문은 결과지각, III 번 질문은 책임지각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에피소드 중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6개의 에피소드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에피소드는 각각 노인의 행복추구권,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남녀평등권, 장애인의 신체자유권, 정신장애인의 사생활권을 담고 있다. 선행연구[3][4]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최근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의 이슈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켰다. 각각의 에피소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서 인권감수성 척도의 Cronbach's α 는 .88,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1이었다. 또한 원 연구에서 인권감수성 척도의 하위개념

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Cronbach's α 는 각각 .71, .74, .61이었다. 본 연구에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Cronbach's α 는 각각 .66, .68, .66이었다.

표 1. 에피소드의 주요 내용

권리	에피소드 제목	주요 내용
노인의 행복추구권	가족회의	사별한 65세 여성노인의 재혼
장애아동의 교육권	장애아동 학교	장애아동학교 설립과 주택가격 하락 우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려씨의 임금	부도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배당
남녀평등권	감원대상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우선적으로 감원대상이 되는 사례
장애인의 신체자유권	의사의 고민	희귀한 유전병을 갖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불임수술 여부
정신장애인의 사생활권	진료자 명단	정신병원진료기록의 경찰서 통보여부

2.2 연구모형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인권감수성 척도개발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모형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하며, 원 연구와 같이 인권감수성은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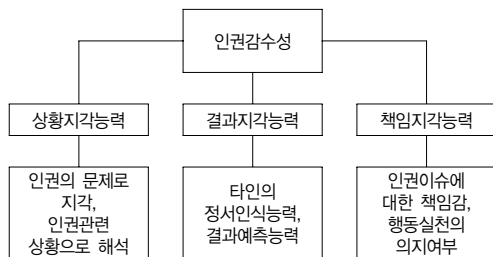


그림 1. 인권감수성 척도개발 연구모형

또한 선행연구 결과[3][7][8] 밝혀진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인권교육경험이 본 연구에서도 인권감수성과 관련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V. 연구결과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의식 관련된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 중 여성이 176명(70.1%), 남성이 75명(29.9%)이었다. 평균연령은 42.87세였고, 40대 응답자가 112명으로서 응답자의 44.6%를 차지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n=251)

	구분	n(%)
성별	남성	75(29.9)
	여성	176(70.1)
연령 (평균 42.87세)	20대	18(7.2)
	30대	64(25.5)
	40대	112(44.6)
	50대	50(19.9)
	60대	7(2.8)
전공	사회복지계열	211(84.0)
	상당계열	31(12.4)
	기타	9(3.6)
학년	1학년	39(15.5)
	2학년	44(17.5)
	3학년	121(48.2)
	4학년	47(18.7)
최종 학력	고졸	112(44.6)
	대졸	128(51.0)
	대학원졸	11(4.4)
종교	종교없음	86(34.3)
	기독교	91(36.3)
	기톨릭	44(17.5)
	불교	30(12.0)
직업 (직종)	사회복지관련 직종	23(9.2)
	공무원	30(12.0)
	전문직	31(12.4)
	회사원	44(17.5)
	서비스직	30(12.0)
	농수산업	2(0.8)
	자영업	9(3.6)
	종교인	8(3.2)
	주부	52(20.7)
	무직	11(4.4)
	무응답	7(2.8)
거주 지역	서울	89(35.5)
	경기	81(32.3)
	강원	23(9.2)
	충청남북	19(7.6)
	경상남북	25(10.0)
생활 수준	전라남북	14(5.6)
	상	9(3.6)
	중	190(75.7)
	하	52(20.7)

1. 인구사회학적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 중 여성이 176명(70.1%), 남성이 75명(29.9%)이었다. 평균연령은 42.87세였고, 40대 응답자가 112명으로서 응답자의 44.6%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전공은 사회복지계열(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이 84%(211명)였고, 상담계열(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이 12.4%(31명)였다. 기타 전공으로는 보건행정학, 부동산학 전공자가 2.6%(9명)였다. 학년분포는 3학년이 48.2%(121명)로서 가장 많았고, 4학년(18.7%), 2학년(17.5%), 1학년(15.5%)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44.6%(112명)였으며, 응답자들이 성인학습자로서 대졸 편입한 경우가 많아 대졸(51.0%), 대학원졸(4.4%)의 비율도 높았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34.3%(86명)였고, 기독교 (36.3%, 91명), 가톨릭(17.5%, 44명), 불교(12%, 30명) 순이었다. 직업은 현재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9.2%(23명)였고, 주부(20.7%, 52명), 회사원(17.5%, 44명), 전문직 종사자(12.4%, 31명), 공무원(12.0%, 30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활수준에 대하여는 주관적 수준을 질문하였고, 75.7%(150명)가 중간정도라고 응답했고, 20.7%(52명)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중-하 수준이 많은 편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권관련 교육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대학교육과정 내에서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8.2%(146명)였고, 인권관련 세미나 등 참석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4.9%(188명)로서 인권관련교육경험이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윤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윤리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53.4%(134명)였고, 많은 학생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존재를 알고 있고(95.2%, 239명), 정독한 경험이 있는 것(76.9%, 19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 선서의 존재를 알고 있고(81.3%, 204명), 정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62.9%, 158명)도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권관련 교육경험 (n=251)

인권관련 교육경험	경험유무	n(%)
대학교육과정내 인권교육	무	146(58.2)
	유	105(41.8)
인권관련 세미나, 워크샵	무	188(74.9)
	유	63(25.1)
(사회복지)윤리 과목 수강	무	117(46.6)
	유	134(53.4)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인지	무	12(4.8)
	유	239(95.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정독	무	58(23.1)
	유	193(76.9)
사회복지사 선서 인지	무	47(18.7)
	유	204(81.3)
사회복지사 선서 정독	무	93(37.1)
	유	158(62.9)

2. 주요 연구변인들의 기술적 통계치

2.1 인권감수성 현황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48.67점이며, 최소 0점에서 최대 90점까지 분포하였다. 5점 척도에 표준화 시킨 경우의 평균은 2.70으로 나타났다. 각 에피소드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3.88점, 장애 아동의 교육권이 3.61점으로 다른 권리들에 비해 높은 정도를 나타냈고, 남녀평등권이 1.64점으로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노인의 행복 추구권(2.85), 정신장애인의 사생활권(2.24), 장애인의 신체자유권(2.00)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또는 그 이하의 인권감수성을 나타냈다. 인권감수성 현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인권감수성 현황 (n=251)

	최소값	최대값	평균(SD)
인권감수성(총점)	0	5	2.70(1.01)
노인의 행복추구권	0	5	2.85(1.74)
장애아동의 교육권	0	5	3.61(1.65)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0	5	3.88(1.36)
남녀평등권	0	5	1.64(1.67)
장애인의 신체자유권	0	5	2.00(2.06)
정신장애인의 사생활권	0	5	2.24(2.08)

김충희(2004)의 정신보건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민감성 연구[4]에서 인권민감성이 4.413점이었고, 사회복지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박정선(2007)의 연구[3]에서는 인권감수성이 3.92점인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은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가 현재 사회복지과목을 수강중인 학생들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클라이언트와의 대면경험, 윤리적 딜레마 경험이 적음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높은 응답을 받고, 장애인의 신체자유권이 낮은 응답을 받은 것은 선행연구결과 [1][3][4]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2002)[1]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2.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인권감수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전공영역에서만 발견되었다. 사회복지계열 전공자의 인권감수성 평균(3.29)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5$).

다른 변인에서 단순 평균을 비교하면 남성(2.73)이 여성(2.69)보다 약간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06)과 20대(2.90) 응답자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60대 이상의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온 것은 고령에도 학업을 수행할 정도의 진취적인 태도를 가진 60대 응답자들이 권리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2.43)보다 상급학년의 인권감수성이 높았고, 최종학력이 대졸(2.74)인 응답자, 종교가 가톨릭(3.02)인 응답자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종교인(3.17)과 사회복지관련 직종 종사자(2.85), 회사원(2.81)의 인권감수성이 높은 편이었고, 농수산업업(2.36), 무직(2.43)이 경우 인권감수성이 낮은 편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경상남북지역(2.88)과 서울(2.82) 거주자의 인권감수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별로는 상류층(2.20)보다는 중류층(2.73)과 하류층(2.70)의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인권감수성 (n=251)

구분	평균(SD)	df	F	sig	
성별	남성	2.73(1.01)	1	.097	.756
	여성	2.69(1.01)			
연령	20대	2.90(.94)	4	.654	.624
	30대	2.62(1.04)			
	40대	2.74(1.05)			
	50대	2.60(.91)			
	60대	3.06(1.07)			
전공	사회복지계열	3.29(.87)	2	6.191	.002*
	상당계열	2.64(1.00)			
	기타	2.33(1.07)			
학년	1학년	2.43(.95)	3	1.194	.312
	2학년	2.80(.93)			
	3학년	2.73(1.02)			
	4학년	2.78(1.08)			
최종학력	고졸	2.62(.94)	2	1.242	.295
	대졸	2.74(1.06)			
	대학원졸	2.66(1.20)			
종교	종교없음	2.68(.99)	3	1.900	.130
	기독교	2.60(.97)			
	가톨릭	3.02(1.07)			
	불교	2.63(1.04)			
직업(직종)	사회복지관련	2.85(.79)	10	.447	.922
	공무원	2.68(.90)			
	전문직	2.58(1.16)			
	회사원	2.81(1.00)			
	서비스직	2.67(1.15)			
	농수산업업	2.36(.59)			
	자영업	2.51(.79)			
	종교인	3.17(.77)			
	주부	2.70(1.10)			
	무직	2.43(1.15)			
무응답	2.61(.02)				
거주지역	서울	2.82(1.01)	5	.717	.612
	경기	2.61(.94)			
	강원	2.63(1.00)			
	충청남북	2.65(.79)			
	경상남북	2.88(1.17)			
	전라남북	2.58(1.26)			
생활수준	상	2.20(1.04)	2	1.168	.313
	중	2.73(1.04)			
	하	2.70(.88)			

* $p < .05$

2.3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사회복지)윤리과목을 수강한 경우 인권감수성 평균이 2.93으로 높았으며, 윤리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라 인권감수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사회복지사 선서를 인지하고 정독한 경험이 있

는 경우에 인권감수성 평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6.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 (n=251)

인권관련 교육경험	경험유무	평균(SD)	df	F	sig
대학교육과정내 인권교육	무	2.63(1.00)	1	1.727	.190
	유	2.80(1.01)			
인권관련 세미나, 워크샵	무	2.62(1.02)	1	1.371	.243
	유	2.77(1.00)			
(사회복지) 윤리과목 수강	무	2.63(1.00)	1	4.341	.038*
	유	2.93(1.10)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인지	무	2.68(1.00)	1	2.949	.087
	유	3.19(1.24)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정독	무	2.57(1.04)	1	1.252	.264
	유	2.74(1.00)			
사회복지사 선서 인지	무	2.69(.97)	1	.312	.577
	유	2.78(1.17)			
사회복지사 선서 정독	무	2.66(1.05)	1	.322	.571
	유	2.73(.99)			

*p<.05

3.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분석

각 에피소드 항목별로 인권감수성의 하위 개념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장애아동의 교육권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서는 상황지각이, 남녀평등권과 정신장애인의 사생활권에서는 결과지각이, 노인행복추구권과 장애인의 신체자유권에서는 책임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에피소드별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n=251)

	상황지각 평균(SD)	결과지각 평균(SD)	책임지각 평균(SD)
노인행복추구권	2.28 (2.25)	2.82 (2.31)	3.45 (2.00)
장애아동의 교육권	3.75 (1.90)	3.61 (2.01)	3.47 (2.0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3.94 (1.80)	3.84 (1.93)	3.86 (1.87)
남녀평등권	1.37 (2.17)	1.86 (2.28)	1.69 (2.14)
장애인의 신체자유권	1.94 (2.30)	1.67 (2.26)	2.39 (2.38)
정신장애인의 사생활권	2.02 (2.36)	2.43 (2.31)	2.28 (2.31)

남녀평등권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는데, 에피소드 내용 자체가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우선 감원대상이 되는 문제여서 최근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감안할 때 이 이슈가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전반적으로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이는 최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노동권 침해 사례 등을 많이 접하면서 이 이슈에 대하여 증가된 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나, 장애여성의 불임시술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의 신체자유권에 대하여는 인권문제로 지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아동의 교육문제와 신체자유 문제를 다른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인식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을 이수중인 성인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과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2.70(5점 척도 기준)으로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고, 실천현장 경험이 많은 일선 사회복지사들에 비하여 인권갈등경험이 적어 인권감수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중 유일하게 전공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계열 전공자들이 타전공자에 비하여 인권감수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배경이나 특성보다는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가 인권감수성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사회복지계열 전공자들의 경우, 입학 전에 인권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학습과정 중에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상급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인권감수성이 증가한 결과를 보면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과정이 응답자들의 인권감수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

을 주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인권관련 교육과정 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복지)윤리 과목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철학적 내용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례중심으로 가치 및 윤리의 다양한 딜레마 상황을 생각해 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학습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인권이 어떤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각 에피소드별로 인권감수성의 하위 개념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장애아동의 교육권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높은 감수성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아동교육과 이주노동자에 대해 증가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교육에서 인권이라는 주제를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UN에서는 ‘인권에 대하여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다’라고 하면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에서 양자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형성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16]. 즉 교수가 인권에 대하여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교육의 학습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체험과 참여를 통한 학습이 유용할 것이다. 강의실에서의 사례학습을 통한 간접경험외에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인권적 자각을 직접경험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격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으나, 사회복지의식 함양을 위하여 가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매체를 이용한 이러닝 수업은 유용할 것이다[17]. 또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나 ‘사회복지현장의 이해’와 같

은 과목을 개설하거나, 단기간의 봉사학습(service-learning) 및 사회복지기관방문 등의 현장학습방법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교과에 인권을 포함시킬 때에는 자기반성적(self reflection) 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의식향상에 초점을 둔 수업에서는 수업 초기에 인권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수업 과정 중에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을 점검하는 계기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업초기에 자기평가를 실시한 집단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감소 및 긍정적 태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18]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받는 대상에 대한 전문적 태도와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학생 자신의 자기점검과 모니터링 기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이 각각의 에피소드를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사람마다 같은 상황에 대하여 다르게 지각하고, 직접 관련된 인권항목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19]. 이는 인권교육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원격대학의 성인학습자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 뿐 아니라 인권관련 교육 경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인권의 갈등적 상황에서 보다 인권을 보장하는 관점을 갖고 클라이언트를 인식하고,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보장·옹호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탐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추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특정 과목을 수강하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다른 전공 학생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권관련 교육경험 여부만을 질문하였으나,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형태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응답자가 70.1%를 차지함에도 성차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에서 남녀평등권에 대한 감수

성이 낮게 나온 것을 볼 때, 여성들의 권리의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지표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2] J. Ife,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김형식·여지영역, 인간과 복지, 2001.

[3] 박정선,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인식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 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 김충희,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5] 정선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3호, pp.59-87, 2006.

[6] 양심영, “아동권리에 대한 지각성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8권, 제4호, pp.571-592, 2004.

[7] 이해원, 최경옥, 이해영,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론 교과목의 개발과 효과성”, *한국아동복지학*, 제29호, pp.74-96, 2009.

[8] 하경희, 강병철,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2호, pp.183-202, 2009.

[9] 강지영, *인권에 대한 인지능력과 정서적 공감의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11] J. Ife, “인권과 사회복지서비스: 기회와 도전”, *사회복지 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p.3-19, 국가인권위원회, 2006.

[12] 박태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 겨울호, p.63, 2002.

[13] Gets,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14] 안소현, *퇴원과 관련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인식과 태도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5] 서미경,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55호, pp.231-254, 2003.

[16] UN Centre for Human Rights,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이해원 역, 학지사, 2005.

[17] 서상현, 김교정, “사회복지교육 이터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전략을 위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7호, pp.104-113, 2007.

[18] 전혜성, “자기평가 적용에 따른 원격교육의 학습효과 증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pp.487-494, 2011.

[19] 문용린,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

저 자 소 개

박 형 원(Hyungwon Park)

정희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5년 8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족, 여성, 아동, 사회복지, 인권